2023년도 제14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o 일 시: 2023. 6. 22.(목), 10:30
- o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강태욱위원, 위정현위원, 하병현 위원
-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분과위원장 |
|---|
| 2. 전차(제2023-141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
| 3. 안건상정분과위원장 |
| 〈의결안건〉 |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
| 시정권고 심의 |
|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원 보호심의부 반하람 주임 |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원 보호심의부 김태일 주임 |
| 4. 폐회선언분과위원장 |
| |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409건(안건번호 제2023-68047호~70455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3-68047호~68048호는 소프트웨어의 제품키를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한 건으로, 게시자의 각 제품키 판매행위가 구매자의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각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점, 이의를 신청한 게시자의 정품판매 소명이 없거나 부족한 점, 각 게시물에 의해 제공되는 불법복제물이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는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68049호~68064호는 블로그에 뮤지컬의 무단촬영 영상 등 판매 게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불 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68065호~68066호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 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시 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68067호~68075호는 영상저작물의 자막파일을 제공 중인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임이 명백한 점, 번역물로서 2차적저작물 이기는 하나 최신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 이용을 직접 촉진하여 합법시장을 곧바로 대체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68076호~68077호는 블로그 및 카페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 중인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 중인 바 저작물의 시장 및 가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건번호 제2023-68078호~70455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불법 복제한 영상물 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4,000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o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3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총 300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건번호 제 2023-13537호~13836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3개에 접속할 수 있는 300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결과 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148회 저작권보호심 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141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반하람 주임: 제2023-141회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내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 및 기타 부분 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 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발언 취지를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함.
- 반하람 주임: 위원님 의견 반영하여 수정하도록 하겠음.
- B 위원: 저작물명 등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비식 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참석위원 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A 위원: 제2023-141회 제2호 안건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우리 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쪽수 기재 후 비공개함이 타당함.
- 참석위원 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에 대해 발언 취지를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수정을 확인하였음.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하고,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쪽수를 기재하여 비공개함.

3. 안건상정

-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반하람 주임: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제1항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으신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됨. 각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척사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심의시 사유를 밝히고 회피하여 주시기 바람.
 - 참석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반하람 주임: 금일 심의안건은 31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4,094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는 제 2023-68047호~70455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 반하람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 2023-68047호~68048호는 시정권고를 받은 OSP가 이의신청한 건으로, 온라인 쇼핑몰 '◈◈'에서 '♡♡♡♡♡' 등의 소프트웨어를 판매 중인 사안 총 2건임.

제2023-127회 제2분과위원회(2023. 5. 30. 개최)는 쇼핑몰에서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물등을 판매 중인 당 사안에 대하여, 심의대상 게시물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유통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가결하였음.

(안건번호 제2023-68047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 ♥♥♥♥를 176,820원에 판매중임.

각 소프트웨어는 공식 홈페이지 외에도 리셀러를 통해 정품의 구입이 가능하기는 하나, 기계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파일·설치방법 등을 발송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 중인 정품 가격의 7

분의 1에서 15분의 1에 이르는 저가에 소프트웨어를 판매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게시자는 적법한 리셀러가 아니며 불법복제물, 개별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볼륨 라이선스키 또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정보 등을 판매중인 것으로 보임. 이는 모두 보호원의 시정권고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소명자료에 의하면 게시자는 중국에서 판매중인 ♥♥♥♥ 라이선스를 개당 398위안(한화로 약 71,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보임. 게시자가구입한 라이선스가 중국내에서 유통되는 공식 라이선스에 해당할수 있지만, 권리자인 '♡♡♡♡♡'는 자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며 일부 상황에 대해서만 양도를 허가하고 있음. 그리고 중국 본토에서 구독 즉 라이선스를 취득한 경우, 해당 구독의 지역은 중국 본토에만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게시자가 공식 판매자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소프트웨어의 제품키를 판매하고 있으며, 구매자가 별도 기재한 이메일 주소를 통해 '라이선스'와 '설치 가이드/디테일한 설치방법'을 발송하고 있는 사정으로 비추어보아 게시자의 판매행위는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안건번호 제2023-68047호~68048호의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게시자의 각 제품키 판매행위가 구매자의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 하여 각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점, 이의를 신청한 게시자의 정품 판매 소명이 없거나 부족한 점, 각 게시물에 의해 제공되는 불법복제물이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 당할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건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B 위원: 어떠한 취지의 이의신청인가.
- 반하람 주임: 제2023-127회 제2분과위원회에서 시정권고 가결하여 삭제된 게시물에 대하여, 게시자가 본인은 정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음.
- B 위원: 제2분과위원회에서 가결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 반하람 주임: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 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임이 인정되는 점,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하였음.
- B 위원: 게시자가 제출한 소명 자료를 살펴보면, 중국에서 적법한 라이센스를 구매해서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음.
- 반하람 주임: 소명자료에 의하면, 게시자가 구입한 라이선스가 중국 내에서 유통되는 공식 라이선스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지만, 권리자 인 '♡♡♡♡♡'는 자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며 일부 상황에 대해서만 양도를 허가하고 있음. 그리고 중국 본토에서 구독 즉 라이선스를 취득한 경우, 해당 구독의 지역 은 중국 본토에만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한국에서 재판매하는 것은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임

- C 위원: 게시자는 정품을 구매했다는 소명자료만 제출하고, 본인이 재판매를 허가받은 리셀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것인가.
- 반하람 주임: 그러함.
- A 위원: 게시자가 제출한 소명 자료 전체를 시연해주시기 바람.
- 반하람 주임: (안건번호 제2023-68048호의 소명자료를 보여주면서) 1~2페이지에서는 중국에서 정품을 구매한 내역, 3~5페이지에서는 시리얼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내역, 6페이지에서는 구매자들이 시리얼키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내용의 후기를 남겨준 내역이 게시되어 있음.
- B 위원: 지금 논의해야 할 사항이 두가지라고 생각됨. 하나는 재판매이슈이고, 다른 하나는 판매 지역 제한 이슈임.
- 김태일 주임: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키의 가격은 지역별로 상이함. 중국과 한국의 가격 차이는 ♡♡♡♡♡의 정책임. 또한, ♡♡♡♡♡ 정책상 해당 라이선스는 해당 국가에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따 라서 중국에서 정품 라이선스를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라이 선스를 판매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B 위원: 라이선스 판매 허가를 받았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함. 다만, 해적판 또는 크랙 버전을 불법복제해서 판매하는 사안이 아니라

지역 제한이 걸려있는 시리얼키를 판매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저작권 침해의 방조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함.

- 이숙형 부장: 대법원 2022.4.14. 선고 2021다303134, 303141 판결에 따르면 사용권 계약에서 정한 컴퓨터 프로그램 양도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사용된 제품키를 구입하여 다운받아 인증한 것만으로 라이선스가 이전된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시리얼키를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 B 위원: 라이선스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저작권 침해의 문제로 보았을 때, 제작자가 의도적으로 지역을 나눠서 판매를 제한해놓은 것을 단순히 재판매하는 행위는 심의위원회에서 시정권고할 만한 저작권침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함.
- D 위원: 판례들을 살펴보면, 라이선스 계약 위반이 중대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고 보고 있음. 또한 양도 제한, 국가 제한 이슈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기는 함. 다만, 이러한 사안이 위원님 의견처럼 심의위원회가 다룰 수 있는 이슈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함.
- D 위원: 또한, ♡♡♡♡♡의 양도 제한 및 국가제한 이슈는 현재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판매할 때도 동일한 제한이 적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함. 실제로 ▲▲▲▲▲▲ 같은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남아공에서 글로벌 라이선스가 인정되는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함. 이렇게 다

양한 조건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 판단이 어려운만큼, 이의제기 건을 전체위원회에 회부해서 논의하는 것을 제안함.

- A 위원: ♡♡♡♡♡가 양도를 허가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
- 반하람 주임: 두 곳 이상의 회사가 합병되는 경우, 다른 회사에 의한 회사 매각 또는 인수, 정부 기관의 민영화 등의 상황에는 양도가 허가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 B 위원: 검토 의견의 근거가 되는 대법원 판례들은 적법한 라이선스를 구입한 사례가 아니라 해킹 또는 크랙 파일을 이용해서 얻어낸 라이선스를 배포한 사례로 보임.
- 이숙형 부장: 위에서 언급했던 판례는 라이선스를 재판매하는 쇼핑 몰을 상대로 한 판결임.
- B 위원: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지 않은 라이선스의 재판매 이슈라는 것은 이해하였음. 다만, 리세일 이슈와 지역 분할 판매 이슈가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3-68047 호~68048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강태욱 위원님은 전체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제안하셨음.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소프트웨어까지 함께 제공하는 것인가.

- 반하람 주임: 프로그램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음. 다운받은 후에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라이선스키가 필요한데, 심의대상 게시물은 이를 이메일 또는 ☆☆☆☆을 통해 전달하고있음.
- 김태일 주임: 첨언하자면, 심의대상 게시물은 복제권을 침해하지는 않음. 저작권 침해 행위의 방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가 문제됨.
- B 위원: 기존에 2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 의견임.
- A 위원: 이의신청 건이기 때문에 현재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삭제된 상태인 것인가.
- 반하람 주임: 그러함.
- A 위원: 이의신청 건에 대한 처리 기한이 규정되어 있는가.
- 반하람 주임: 심의위원회 규정상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에 대한 처리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음.
- A 위원: 그렇다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분과위원회에서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전체위원회로 회부해서 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참석 위원 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3-68047호~68048의 심 의대상 게시물들은 전체위원회의 상정하는 것으로 의결함.
- B 위원: 게시자에게 추가 소명자료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현재 제출한 소명자료에는 게시자가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는 라이선 스 키의 판매 페이지만 제시되어 있는데, 게시자가 실제로 구매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내역 등이 준비된다면 좋을 것 같음. 보호원이 이의신청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게시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었다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A 위원: 안건이 전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니 추가로 소명할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라는 안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음.
- 반하람 주임: 추가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해서 해당 안건 전체 위 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음.
- 반하람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 2023-68049호~68064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 청한 건으로, 뮤지컬의 밀캠, DVD, 온라인 생중계 녹화 영상 등을 ♣♣♣ 블로그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사안 총 21건임.

(안건번호 제2023-68055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 물에는 판매중인 불법복제물의 목록이 게시되어 있으며, 게시자는 수십 개의 비밀댓글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고 있음.

안건번호 제2023-68049호~68064호의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 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건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3-68049 호~68064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3-68049호~68064호의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 반하람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 2023-68065호~68066호는 민원인(익명 1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출판물을 스캔한 PDF파일을 '♠♠♠^'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사안 2건임. (안건번호 제2023-68065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예서 문제집을 스캔한 PDF파일을 제공하고 있음. 34건의 채팅이 진행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안건번호 제2023-68066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에서

문제집을 스캔한 PDF파일을 제공하고 있음. 52건의 채팅이 진행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해당 안건번호 제2023-68065호~68066호의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 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건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안건번호 제2023-68065호의 채증자료를 살펴보면, 상품 정보 내에 나열된 문제집 명들은 모두 ◐◐◐ 시험을 위한 문제집들을 지칭하는 것인가.
- 반하람 주임: 그러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3-68065 호~68066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3-68065호~65066호의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

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 반하람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 2023-68067호~68075호는 민원인(실명 1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 블로그에 게시된 일본 애니메이션의 자막 공유 게시물 총 49건임. (안건번호 제2023-68070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블로그에서 애니메이션 '■■■ ■■ 2기 4화의 자막을 다운로드 형태로 제공 중임.

심의 대상 게시물이 제공 중인 자막파일은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과 결합하여 이용될 것을 전제로 제작되어 있어, 영상물의 불법복제물의 이용 및 감상을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 특히 심의 대상 게시물과 같은 최신저작물의 경우 공표 초기에 불법복제및 전송이 이루어지는 것은 합법시장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것이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2차적저작물성에도 불구하고 시정권고의필요성이 비교적 강하게 인정된다고 할 것임.

우리 심의위원회는 본건과 같이 동영상 없이 자막만 제공하는 경우 사안별로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권고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적극적 요소에 대하여, ①게시자가 해당 자막파일이 불법 복제된 영상물과 결합하여 이용될 것이라는 점 및 자막파일 전송 행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한바 침해의 고의성을 부정하기 어려움. ②게시물 하단에 광고 배너를 게시하여 등 영리를 추구하고 있으며, ③심의대상 블로그는 2023. 6. 16. 기준 100건이 넘는 자막파일을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 중인 사실이 인정됨.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움.

소극적 요소에 대하여, ①심의대상 자막파일은 게시자가 직접 제작한 것으로 보이지만, ②순번 25번을 제외하고는 위 원저작물들은 현재 합법 시장에서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이용이 가능한 점, ③위 저작물들은 모두 최신저작물로서 저작권자가 장기간 방치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시정권고 제도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대상인 것으로 파악됨.

종합하면,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막(어문)을 제 공중인 점, 번역물로서 2차적저작물이기는 하나 최신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 이용을 직접 촉진하여 합법시장을 곧바로 대체하는 부 정적 영향이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건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다운로드 한 자막 파일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 반하람 주임: 불법 복제된 영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다운로드 한 자막을 같이 재생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음.
- A 위원: 자막 관련 프로그램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도 영상과 함께 재생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 반하람 주임: 그러함. 영상물의 파일명과 자막의 파일명이 동일한 경우,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자막을 씌워서 재생해주는 기

능이 존재함.

- B 위원: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 내에 자막을 불러오는 기능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일반인도 어렵지 않게 다운로드한 자막 파일을 재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3-68067 호~68075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3-68067호~68075호의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막(어문)을 제공중인 점, 번역물로서 2차적저작물이기는 하나 최신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 이용을 직접 촉진하여 합법시장을 곧바로 대체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 반하람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 2023-68076호~68077호는 민원인(실명 2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블로그 및 카페에 게시된 영상(방송)의 불법복제물 총 10건임.
 - (안건번호 제2023-68077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블로그에서 영상 (방송) '★★★★★ ★★★★'의 17화 전체분량을 스트리밍 형태로 제 공 중임.

해당 안건번호 제2023-68076호~68077호의 10개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이용하고 있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건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3-68076 호~68077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3-68076호~68077호의 심의대상 게시물은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이용하고 있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 반하람 주임: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제2023-68078호~70455호는 보호원이 정보통 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드라마 '샬럿 왕비:브리저튼 외전'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

건번호 제2023-68263호는 웹하드에서 드라마 '샬럿 왕비:브리저튼 외전'의 1화에서 6화 전체분량을 30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5. 4.에 넷플릭스에서 독점 공개한 드라마임.

(드라마 '장월신명'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 2023-68324호는 웹하드에서 드라마 '장월신명'의 14화를 14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4. 6.부터 5. 9.까지 중국 유쿠에서 방영한 드라마임.

(영화 '길복순'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 2023-68880호는 웹하드에서 영화 '길복순'을 32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3. 31.에 넷플릭스에서 독점 공개한 영화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건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 건번호 제2023-68078호~70455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안건번호 제2023-68078호~70455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3-68078호~70455호 중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3-68047호~68048호는 전체위원회에 상정하며,

안건번호 제2023-68049호~68064호는 가결하며,

안건번호 제2023-68065호~68066호는 가결하며,

안건번호 제2023-68067호~68075호는 가결하며,

안거번호 제2023-68076호~68077호는 가결하며,

안건번호 제2023-68078호~70455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o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21쪽부터 24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3-13537호~13836호(순번 1번~300번)는 구글 검색 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o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14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14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6. 29.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강태욱

위원 위정현

위원 하병현